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785
----------	-------

발의연월일 : 2026. 7. 7.

발 의 자 : 박성훈 · 임이자 · 조은희  
김장겸 · 최보운 · 조지연  
박수영 · 김은혜 · 김성원  
박충권 · 송언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의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러나 최근 어업포기 및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어촌 내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로 전환될 경우 대행용역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영세한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32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하려는 것임 (안 제106조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1호, 제2호”로, “제4호의2”를 “제3호는 203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4호의2”로,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를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로,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를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로,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를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로,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를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